

소득세 신고, 기준경비율이 도입된다

표준소득세율 폐지…2002년 소득분부터 적용

■ 취재 / 오형석 ohs@mbakery.co.kr

국세청(www.nta.go.kr)은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표준소득세율을 폐지하고 2002년 소득분부터 기준 경비율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제 도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기장(記帳)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것”이라고 밝히 사업주들이 새로 적용 받는 기준 경비율제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세금신고 유도 … 기장습관 필요할 듯

지난 4월 4일 국세청 표준소득률 조정 공고에 의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 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그동안 기장하지 않던 사업자들은 영수증 수취를 비롯해 기장에 익숙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장마다 기장습관을 유도해 공정한 세금 추징에 나서겠다는 관계 당국의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표준소득률제도에 의하면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2002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제도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각종 영수증 등 기장에 필요 한 서류를 보관해두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표준소득률에 의하면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 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심의위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에서 소득 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경상계 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0.2)으로 추정해서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



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확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 3항에 의하면 200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현행 표준소득률은 올해 5월에 2000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내년 5월에 올해(2001년) 귀속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사용하는 등 모두 2차례만 적용되고 폐지되며 그 이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기준경비율 적용 이후 영수증 수취는 필수

현행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자가 영수증 등을 수취해 기장하느냐에 따라 실제 신고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즉 기장 유무에 관계없이 표준소득률이

<표 1> 소득세 신고 제도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법

가)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표준소득률(무기장 사업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기장사업자)}$$

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실제 지출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금액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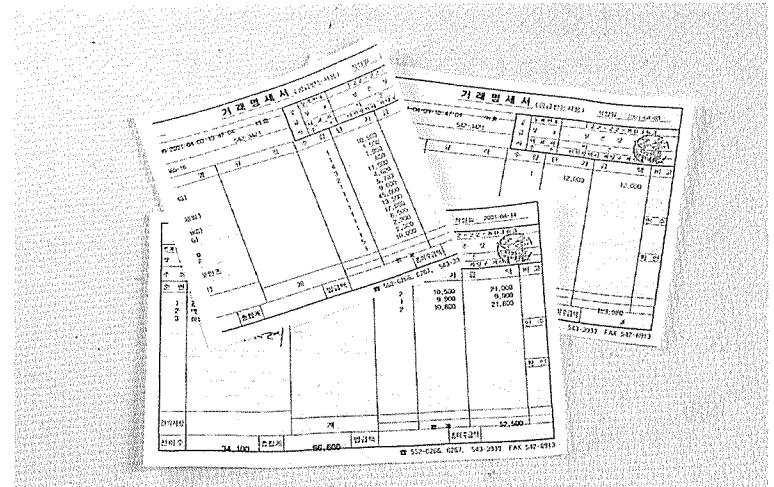
<표 2>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구분	표준소득률	기준경비율
소득세 신고	추계신고자의 신고 간편 - 다수의 무신고자에 일률적으로 적용 - 납세자의 개별 신상 반영 불가 → 부과세제도에 적합	추계신고자도 자기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 -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 인정 - 납세자의 개별 신상 반영 →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경비 지출에 대한 입증 책임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 입증책임 전혀 없음	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짐
기장 유도 효과	부정적 영향	기장유도에 적합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영향	추계신고자의 정규 영수증 수취 유인효과 있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라도 정규영수증 수취 유인효과 큼
매출 누락시 세 부담	추계신고자가 세 부담 유리 - 추계신고자는 수입 누락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만 소득가산	기장신고자와 같은 세 부담 - 추계신고자도 원가를 입증 못하면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가산

같은 동일 업종의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표준소득율을 세율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할 때에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이는 영수증을 사용하는 상거래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과세를 지켜나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즉,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세금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세금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여기서 말하는 주요경비라는 것은 상품이나 원·부재료 등의 매입경비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한다. 또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실제 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비 및 증명은 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 지급이자 등이다. 매입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재료를 매입한 경비 및 외주기공비를 이른다. 지급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임차료를, 지급이자는 금융기관의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한편,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정해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곱한 것을 빼면 나오게 된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따라 영수증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활성화 방안이 적극 논의되는 시점에 조세제도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추후 조세행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6]

